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7. 1.

발 의 자 : 박태완 의원 외 4명

1. 개정사유

2013. 7. 1. 부로 업무를 시작하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상임 위원회를 명확히 하고,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(안 제3조제2항제2호마목)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6조제1항, 같은조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2항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“과반수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~라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장에서 1인을 추천하고,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----- ----- 1명 -----</p> <p>② ----- 1명 -----</p>
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	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----- ----- 1명 ----- -----</p>
<p>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</p>	<p>제11조(부위원장) ① ----- 1명을 둔다.</p>
<p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상임위원 과반수 이상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.</p>	<p>제11조의2(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) ① -- ----- ----- 않을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과반수의 ----- -----</p>

타 구·군의 도시·시설 관리공단 관련 참고자료

구 분	남구 도시관리공단	울주군 시설관리공단
소관 상임위	행정자치위원회	내무위원회
예산안 심사시	공단 예산은 부서별로 심의되므로 공단에서는 출석하지 않음	공단 예산은 부서별로 심의되므로 공단에서는 출석하지 않음
행정사무감사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서와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하며, -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 해당부서 감사시 질의·답변이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출석하여 수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에 포함하여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하며, -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 해당부서 감사시 질의·답변이 미비할 경우 공단 부장급 및 과·팀장급이 출석하여 수감
업무보고시	업무보고시에는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출석하여 보고함	업무보고시에는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출석하여 보고함
집행부 소관부서	기획예산실(행자위)	기획예산실(내무위)
공단위탁사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 운영 2.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3. 장생포고래박물관 관리 운영 4. 문수국제양궁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5. 보안등 유지 보수 6.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사업 7.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8. 쓰레기 봉투 공급 대행사업 9.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2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3.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·운영 4. 공영주차장의 관리·운영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

<중구 도시관리공단 사무>

1. 공영주차장, 2. 거주자우선주차제, 3. 청사 부설주차장, 4. 유곡 테니스장,
5. 십리대밭축구장, 6. 함월구민운동장, 7. 노점상 실명제, 8. 쓰레기봉투공급 대행사업,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7월 1일 박태완 의원 외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의안번호 제998호)
(2013년 7월 8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박태완 의원)

가. 개정이유

2013. 7. 1. 부로 업무를 시작하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상임 위원회를 명확히 하고,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(행정자치위원회) 지정
 - ▶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 마목 신설
- 2)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다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박용순 전문위원)

- 2013. 7. 1. 부로 업무를 시작하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확히 하고,
- 기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